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7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8. 2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민간위탁 계약서·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한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없애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협약내용의 공증의무 사항 삭제(안 제8조제1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(2) 「공증인법」 제2조
- (3) 「민사소송법」 제356조 및 제3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1. 7. 5. ~ 7. 25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하며,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” 를 “한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협약체결 등)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<u>하</u> 며, <u>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.</u>	제8조(협약체결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다.</u>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증인법

제2조(공증인의 직무)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(囑託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.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.

1.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(私權)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(公正證書)의 작성
2. 사서증서(私署證書) 또는 전자문서등(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)에 대한 인증
3.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

□ 민사소송법

제356조(공문서의 진정의 추정)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.

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.

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58조(사문서의 진정의 추정)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(拇印)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.